

인천지방법원 2021. 12. 16 선고 2020나7996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1. 12. 16 선고 2020나79960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0. 11. 24 선고 2020가단202530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

담당변호사 시정기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1. 12. 2.

판결선고 2021. 12. 16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. 11. 24. 선고 2020가단202530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 :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인천 계양구 D건물, 1, 2, 3, 4층(1층 E, 2층 F, 3층 G, 4층 H) 소매점 영업에 관하여 2019. 5. 3.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을 60,037,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60,037,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항소취지 :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 즉,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, 그营业을 양수한 피고가 그러한 상태를 직접 인지할 수 없었다. 위 회사의 적자누적이 기존사업자의 개인적인 재정상황 악화 때문인지 아니면 거래처와의 채무관계 악화 때문인지를 양도인인 위 회사의 운영자 I이 피고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것이다.

그러나 피고 스스로 제1심법원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. 그밖에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증거, 원고의 이 사건 손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주장,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은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오기두, 판사 소병진, 판사 원용일